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인세율 인하〉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0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법인세율 인하(정희용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회용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법인세율 인하(정회용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법인세율(제55조) ○ 일반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u>10%</u></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u>20%</u></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u>22%</u></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u>25%</u></td></tr> </tbody> </table>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u>20%</u></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u>22%</u></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u>25%</u></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u>10%</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2%</u>	3천억원 초과	<u>25%</u>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u>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2%</u>	3천억원 초과	<u>25%</u>	☐ 법인세율 인하 ○ 일반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u>9%</u></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u>19%</u></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u>21%</u></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u>24%</u></td></tr> </tbody> </table>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u>19%</u></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u>21%</u></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u>24%</u></td></tr> </tbody> </table>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u>9%</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1%</u>	3천억원 초과	<u>24%</u>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u>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1%</u>	3천억원 초과	<u>24%</u>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u>10%</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2%</u>																																				
3천억원 초과	<u>25%</u>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u>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2%</u>																																				
3천억원 초과	<u>25%</u>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u>9%</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1%</u>																																				
3천억원 초과	<u>24%</u>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u>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21%</u>																																				
3천억원 초과	<u>24%</u>																																				

* 정회용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6)

☐ 개정안은 법인세 전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을 1%p 씩 인하하러는 것임.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어 그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었음. 20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

인하되어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음. 그리고 2026년에는 다시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 인상되어 최고세율이 25%가 되었음.

[법인세율 변경 현황]

과표구간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2023	2026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9%	10%
1~2억원	28%	27%	25%							
2~200억원				22%	22%	21%	22%			
200~3,000억원								25%	24%	25%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2개						3개	4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어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4.6%에 달하였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비중이 19.4%로 감소하였다가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여 23.4%로 다시 감소하였고,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의 하락 등으로 2024년에는 18.6%로 더욱 감소하였음. 2025년에는 반도체 수요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중이 22.6%로 상승하였음.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3	201.9	43.9	21.7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1
2019	293.5	72.2	24.6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2024	336.5	62.5	18.6
2025	373.9	84.6	2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한편, 최근 10년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2024년도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10년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6.1	16.6	17.2	17.6	19.1	17.5	18.1	18.5	17.8	16.7
2억원 이하	8.9	8.9	9.1	9.0	8.9	9.1	9.3	10.1	9.3	9.2
2~200억원	14.8	15.0	15.2	15.2	15.0	14.7	14.5	14.9	14.5	13.4
200~3,000억원	18.6	19.2	19.8	20.1	20.1	20.2	20.5	20.6	19.8	19.0
3,000억원 초과	16.5	17.4	18.4	18.7	22.5	19.6	21.3	20.5	20.0	20.4

주: 법인세 신고기준,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청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2024년)]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전체	2억원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초과
신고 법인수	전체	1,058,498	936,576	120,147	1,681	94
	(비중)	(100.00)	(88.48)	(11.35)	(0.16)	(0.01)
총 부담세액	전체	58,164,867	1,823,667	17,783,674	19,360,964	19,196,562
	(비중)	(100.00)	(3.14)	(30.57)	(33.29)	(33.00)
실효세율		16.7	9.2	13.4	19.0	20.4

주: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상위 소득금액 구간의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2024년 기준으로 5,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법인이 전체 법인수(105.8만개)의 0.006%(62개)를 차지하지만 과세표준의 23.27%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096개로 전체 법인 수의 0.4%인데, 과세표준의 63.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4%에 달하고 있음.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20.3%에 이르고 있음.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2024년 신고 기준)]

구분	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만개	%	누적 %	조원 (A)	%	누적 %	조원 (B)	%	누적 %	B/A, %
합계	105.8	100.0	-	349.0	100.0	-	58.2	100.0		16.7
0 이하	47.0	44.4	100.0	0.0	0.0	100.0	0.2	0.4	100.0	-
0~1억원	36.5	34.5	55.6	8.7	2.5	100.0	0.7	1.2	99.6	8.1
1~5억원	16.0	15.1	21.1	30.8	8.8	97.5	2.6	4.5	98.4	8.5
5~10억원	3.0	2.8	6.0	18.3	5.3	88.7	2.0	3.5	93.9	11.0
10~50억원	2.6	2.5	3.2	47.6	13.6	83.4	6.4	11.0	90.4	13.5
50~100억원	0.4	0.4	0.7	22.1	6.3	69.8	3.4	5.9	79.4	15.6
100~500억원	0.3	0.3	0.4	55.8	15.99	63.4	9.7	16.6	73.4	17.3
500~1,000억원	0.04	0.04	0.08	25.5	7.31	47.4	4.9	8.4	56.8	19.1
1,000~5,000억원	0.04	0.03	0.04	58.8	16.86	40.1	11.6	20.0	48.4	19.8
5,000억원 초과	0.006	0.006	0.006	81.2	23.27	23.3	16.5	28.4	28.4	2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0년 3.2%에서 2022년 5.0%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8%로 다시 감소하였음. 이는 G7 평균인 3.2%에 비해 0.4%p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3.7%와 비교하더라도 0.9%p 낮은 수준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3.2	3.6	5.0	3.9	2.8
G7	일본	3.8	4.4	4.8	4.7	5.1
	캐나다	4.1	4.8	4.8	4.8	4.6
	영국	2.4	2.9	3.1	3.3	3.4
	프랑스	2.3	2.4	2.8	2.3	2.3
	독일	1.6	2.2	2.3	2.2	2.2
	이탈리아	2.0	1.9	2.7	2.7	2.7
	미국	1.4	1.9	2.2	2.2	2.2
	평균	2.5	2.9	3.2	3.2	3.2
OECD 평균		2.8	3.3	3.9	3.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24년 기준 11.1%로 G7 평균 9.0%보다 높고 OECD 평균 11.4%보다 낮은 수준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12.1	12.8	16.8	14.4	11.1
G7 평균	7.2	8.3	9.0	9.1	9.0
OECD 평균	9.1	10.3	12.0	11.9	1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①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 ②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 ③세수효과 등 주요 쟁점별로 찬반논거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함.

□ 첫째, 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실증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한국신용정보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¹⁾

미국에서의 감세정책은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의 급증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분배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음.²⁾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입장과 양자간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양립하는 상황임.³⁾

1)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2) 이준구, 「재정학」 6판, p.652.

3)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024. 6.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함.

재정경제부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⁴⁾⁵⁾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Delta 0.7\%$, 고용 $\Delta 0.2\%$, GDP $\Delta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2.4월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8년)과 프랑스('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음.⁶⁾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7. 22.

5) 다만,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확대 등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세율을 1%p씩 다시 인상하였다는 입장임.

6) 남창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264호, KDI, 2016.11. p.6.

□ 둘째,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함.⁷⁾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및 실제 부담세액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⁸⁾

재정경제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⁹⁾

영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였으나 2023년에 25%로 인상하였고, 프랑스 역시 최고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25년 대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이 외에도 2025년 튀르키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0%로 5%p 인상하였고, 에스토니아는 20%에서 22%로 2%p 인상한 바 있음.¹⁰⁾

또한, 최고세율 기준(지방세 포함)으로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로 G7 평균 28.6%에 비해 2.2%p 낮은

7) 다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최고세율에 따른 국제적 비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8)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 49, 2025. 7. 31.

9)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역시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에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The downward trend in statutory CIT tax rates seems to have halted with far more jurisdictions implementing rate increases than decreases in 2023,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edition of the Tax Policy Reforms report. The CIT rate increases observed were of significant magnitude. (2024 OECD Tax Policy Reforms)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p. 242, 2025. 4.

수준임. 다만, OECD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에 비해서
는 2.2%p 높은 수준임.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25년 기준)]

구 분	우리나라	G7 평균	OECD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6.4%	28.6%	24.2%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임.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기준)은 2011년 39.5%에서 2018년에 29.7%로 인하되었고, 미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연방정부 기준)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하였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국세 기준)을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하였다가 2023년에서야 24%로 낮추어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것임.¹¹⁾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7.5%로 2025년 기준 OECD 평균인 24.2% 대비 높고, 2024년 기준 총조세

11) 2026년부터는 다시 25%로 인상되었음

대비 법인세 비중(11.1%)은 G7 평균(9.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12.1	12.8	16.8	14.4	11.1
G7 평균	7.2	8.3	9.0	9.1	9.0
OECD 평균	9.1	10.3	12.0	11.9	1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24.2%에서 26.4%로 2.2%p 상향된 반면, G7평균은 31.0%에서 28.6%로 2.4%p 하락하였음.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단위: %, %p)

구분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차이 (‘25-’15)
대한민국	24.2	27.5	27.5	27.5	26.4	26.4	26.4	2.2
캐나다	26.7	26.2	26.2	25.9	26.0	26.0	26.0	△0.7
프랑스	38.0	32.0	28.4	25.8	25.8	25.8	36.1	△1.9
독일	29.8	29.8	29.9	29.9	30.1	30.1	30.1	0.3
이탈리아	31.3	27.8	27.8	27.8	27.8	27.8	27.8	△3.5
일본	32.1	29.7	29.7	29.7	29.7	29.7	29.7	△2.4
영국	20.0	19.0	19.0	19.0	25.0	25.0	25.0	5.0
미국	39.0	25.8	25.8	25.8	25.8	25.6	25.6	△13.4
G7 평균	31.0	27.2	26.7	26.3	27.2	27.2	28.6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아울러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에 따라 각국에서 앞다투어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인 시점에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율 인상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셋째,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대립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보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2025년 기준 법인세는 국세수입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인데,¹²⁾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³⁾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될 경우 2023년에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0.6% 수준인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경제 성장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¹⁴⁾

12) 2022년 26.2% → 2023년 23.4% → 2024년 18.6% → 2025년 22.6%

13)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p. 383, 2024. 8.

14)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KDI FOCUS, 2022.10.4. p10.

□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는 앞서 살펴본 최근의 경제상황, 해외 동향, 세수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